



삼일회계법인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로드맵 초안 및 확정 공시기준 주요 내용

Sustainability Platform

2026.03



Contents

1. 개요	3p
2. 공시 제도 로드맵 초안의 목표 및 성격	3p
3. 주요 내용	4p
4. 확정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첫 번째 세트)	6p
5. 기업 준비 방향	8p

1. 개요

2월 25일,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로드맵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1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 발표 이후 5년 만입니다. 그간 구체적인 일정 없이 정체돼 있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논의가 다시 공식적인 정책 궤도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3월 31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거친 후, 'ESG 금융 추진단'을 통해 4월 중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로드맵 초안에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공시 제도 로드맵 초안의 목표 및 성격

금융위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의 핵심 목표는 국내 공시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공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EU 등 주요국의 공시 일정, 특히 2029년부터 적용되는 EU 역외기업 공시 의무를 고려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공시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공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일정과 적용 방식을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로드맵 초안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기보다, 그간 5년에 걸쳐 준비·논의되어 온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사회적 합의 사항을 일단락 짓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3. 주요 내용

초안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즉각적으로 전면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수용 가능성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표1. 공시 제도 로드맵 초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시행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FY2027)부터 시행 → 2027년 지속가능성 정보를 2028년 중에 공시 의무 부과.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FY20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58개사, 약 6.9%)부터 단계적 적용 확대 적용 예시: 구체적인 확대 시점과 대상은 예시 형태로 제시됨.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5px;"> <p>예) 2029년(FY2028)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p> </div>
스코프 3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범위에 포함하되, 3년 유예기간 부여(2031년부터 공시) 면제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최대 140억원 이하)으로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 법정공시 전환 시 면제범위 재검토 예정 <p><small>* 고탄소 배출 업종 기준: EU CBAM 참고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업종</small></p>
공시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소 공시* 로 시작 → 제도 안착 후 법정 공시로 전환 법정공시** 전환 시기는 의견 수렴(~3.31)을 통해 확정 예정 <p><small>* 거래소 공시: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로 상장회사에 대해 적용(위반시 제재금 및 벌점)</small></p> <p><small>** 법정공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로 위반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대상</small></p>
공시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3월 말 공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반기 결산 시점(8월 중순) 허용
제3자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자율 → 단계적 의무화 방안 검토 예정
면책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한 방법론과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경우, 사후 오류 발견 시에도 면책 허용 제도 도입 첫 해에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보다는 계도·컨설팅 중심으로 운영
향후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수렴 기간: 2026.2.25(수) ~ 2026.3.31(화) 「ESG 금융 추진단」을 거쳐 확정·발표 (2026년 4월 목표) 공시 제도 로드맵 확정 이후 거래소 공시 규정 개정 등 추진

다음은 로드맵 초안 발표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항입니다.

■ 공시 대상 회사 규모 적용 시기

최초 공시 대상연도가 FY 2027년 인 경우, 적용 대상 회사 판단 기준연도는 FY 2026년 말 또는 FY 2027년 말 적용 여부

■ 확대 적용 대상 시기

로드맵 초안에서는 단계적 적용 원칙만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확대 시점과 대상은 예시 형태로 제시됨. 예를 들어 2029년(FY2028)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업 규모 금액과 적용 시기

■ 첫 해 소규모 종속회사 공시 의무 면제 기준

공시 첫 해에 한해 일정 기준(예: 자산·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을 충족한 종속기업은 공시의무 면제되며, 향후 공시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예정*

* 소규모 종속회사 판단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적용기준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면제 기준 적용 전과 적용 후 보고 범위 변동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한 결정이 필요

4. 확정-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첫 번째 세트)

공시기준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가 제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2024년 4월 공개초안 발표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첫 번째 세트가 마련됐으며, 2026년 2월 26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표2. 공시 기준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공시기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ISSB 제정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됨 						
	<table border="1"> <tr> <td>제1호 '일반사항'</td> <td>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 일반사항 제시 (IFRS S1 기반)</td> </tr> <tr> <td>제2호 '기후 관련 공시'</td> <td>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 제시 (IFRS S2 기반)</td> </tr> <tr> <td>정책공시 (제101호)</td> <td>제외 (향후 국제기준 마련 시 재검토 예정)</td> </tr> </table>	제1호 '일반사항'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 일반사항 제시 (IFRS S1 기반)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 제시 (IFRS S2 기반)	정책공시 (제101호)	제외 (향후 국제기준 마련 시 재검토 예정)
	제1호 '일반사항'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 일반사항 제시 (IFRS S1 기반)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 제시 (IFRS S2 기반)					
정책공시 (제101호)	제외 (향후 국제기준 마련 시 재검토 예정)						
4가지 핵심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버넌스 기업이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방법 전략 위험 및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한 기업의 구체적 대응 방안, 불확실성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 관련 정보 위험관리 위험 식별 프로세스 등 기업이 해당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는 방법 지표 및 목표 기업의 기후 관련 목표와 기업의 달성 정도 						
선택공시·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 공시 허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 톤당 내부탄소가격 - 산업별 지표 (예: 반도체-물소비량, 자동차-평균연비) 기간 범위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1년), 중기(1~5년), 장기(5년)로 정의 제시. 단, 기업별 산업 특성 고려해 다른 정의 사용 가능 						
자발적 적용 기업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시기 예외: 자발적 적용 기업은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지 않아도 됨 경과규정 재적용: 공시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다가 의무 공시로 전환하는 경우, 경과 규정(스코프 3 유예, 비교정보 면제 등)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음 						
정보 이용자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발행 승인일과 승인자를 공시 기후 관련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어 생략할 시, 그 사실과 근거를 기술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사용한 방법별로 배출량 구분 공시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2.26일, KSSB에서 공시기준 첫 번째 세트의 최종안 의결됨 						
이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기준원은 공시기준 이해에 도움이 되는 교육자료 19종*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2차례에 걸쳐 나누어 발표할 예정 						

*** 교육자료 19종**

공시기준서 전반 (11개)

- FAQ
- 적용사례
- 거버넌스
- 비례성 메커니즘
- 자발적 적용
- 위험 및 기회 식별과 중요한 정보에 대한 판단

- SASB 기준 활용
-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의 연계
-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 보고기업
- 가치사슬

기후 공시 (8개)

- 기후 관련 정보만 공시할 때, 공시 기준서 제1호의 적용
- 물리적 위험의 식별
- 내부 탄소 가격
- 기후 회복력 평가
- 자연, 사회적 측면과 기후 공시
- 스코프 1, 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 GRI 기준과의 상호운용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심으로

5. 기업 준비 방향

이번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로드맵 초안은 아직 확정 전 단계이지만, 공시 의무화의 방향과 속도가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기업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 과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 과제는 공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실무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기후공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금융위가 발표한 로드맵 초안과 KSSB가 마련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모두 연결 기준, 재무적 중요성, 정보의 신뢰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구조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① 공시 거버넌스 재정립

기후공시 대응의 출발점은 **공시 거버넌스의 재정립**입니다. 기후공시 정보 작성자, 승인자, 총괄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R&R)**을 사전에 정의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후공시를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보고가 아닌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로 규정하고 있어, 지속가능성 담당 조직의 단독 대응보다는 이사회, 경영진, 재무조직, 지속가능성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결 구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와의 정합성, 전략 및 투자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기후공시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전사 차원의 협업 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 정립은 향후 외부 인증이나 규제 감독이 강화될 경우에도 기업이 **일관된 대응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② 공시 범위 및 경계(Scoping) 명확화

두 번째 과제는 **공시 범위 및 경계, 즉 Scoping의 명확화**입니다.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이하 기후 공시 기준)'에서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 실체를 전제로 하는 연결 기준 공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종속회사 공시 범위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종속회사와 사업을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항목별·주제별로 **재무적 중요성에 따라 공시 범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적인 과제로 부각됩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주요 기후 리스크가 집중된 사업이나 법인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후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세 번째 과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후 데이터 관리체계의 고도화**입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후공시의 핵심 지표로 다루고 있으며, 최소한 스코프1&2에 대해서는 일관된 산정 기준과 검증 가능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스코프3까지 고려한 구조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대응에 머물지 않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결 기준 공시를 전제로 할 경우, 개별 법인 단위의 산정 방식 차이, 내부거래로 인한 중복 계상, 해외 법인의 데이터 품질 편차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 기준 배출량 관리, 내부거래 제거, 산정 기준의 통일 등은 조기에 준비가 필요한 핵심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기후 데이터 관리체계의 고도화는 **공시를 위한 데이터 축적**을 넘어, 향후 **재무영향 분석, 전환계획 수립, 외부 인증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큼니다.

④ 기후 관련 재무영향 분석 체계 구축

네 번째 과제는 **기후 관련 재무영향 분석 체계의 구축**입니다. 기후 공시 기준은 **기후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향이 발생하는 경로(Impact Pathway)**를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 위험이나 기회가 비용 증가, 투자 확대, 자산 손상, 수익 구조 변화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식별하고, 이를 계정과목, 예산, 투자 데이터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성 분석을 넘어, 기업의 재무 정보와 일관된 논리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높은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재무영향 분석 체계는 **향후 전환계획(Transition Plan) 공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기후 대응 전략이 재무적으로 얼마나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⑤ 내부통제(ICSR) 관점의 데이터 신뢰성 확보

마지막 과제는 **내부통제(ICSR) 관점에서의 데이터 신뢰성 확보**입니다. 기후공시가 법정 공시 성격을 갖게 되면서, 지속가능성 정보 역시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ICFR)에 준하는 내부통제 관점의 관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부서나 담당자의 수작업 관리에 의존하기보다는, 표준화된 절차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의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존재 여부만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데이터를 산출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생성, 검증, 승인 과정이 사전에 정의된 프로세스에 따라 운영되고, 그 전 과정이 시스템 상에서 일관되게 기록·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이력은 향후 외부 감사나 인증 과정에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부통제 체계는 **공시 신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시 오류나 수정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기후공시가 매년 반복되는 정기 공시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삼일회계법인

Contacts

Sustainability Platform

권미엽 Partner, Reporting & Assurance
02-709-7938 | miyop.kwon@pwc.com

이진규 Partner, Advisory
02-3781-9105 | jin-kyu.lee@pwc.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603W-RP-035

© 2026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Korea group of member firms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